

##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안내

당사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**□ 대상투자신탁**

-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(채권 - 재간접형)

**□ 변경 대상서류**

-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

**□ 변경 내용:**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와 관련, 평가이익을 미차감하여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으로 변경

변경 문서	기존	변경 내용
집합투자규약	제 33 조 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	제 33 조 (이익분배)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. 다만,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.
투자설명서 제2부 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. 이익배분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에서 평가이익을 차감한 나머지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다만,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 (이하 생략)	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. 다만,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 (零)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. (이하 동일)

**□ 변경일:** 2009년 12월 2일